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74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09. 27. 김향숙 의원 등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10. 18.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이유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36호
- 예고기간: 2023. 9. 27.(수) ~ 2023. 10. 6.(금) [9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고성군 농업인등에 대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부합된다고 판단됨.

[참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2조) 농산물, 농업인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은 ㉠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등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고, 안 제4호의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자로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모두 관내에 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 제4조)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 (안 제6조 ~ 제7조) 식품가공사업 점검 및 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증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아울러, 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지원대책 마련 등 철저한 업무추진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10. 18. 원안가결 함.